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50,452,744	22,513,582
일반회계	735,934,479	22,078,034
특별회계	14,518,265	435,548
기타특별회계	14,518,265	435,548
주차장특별회계	11,464,811	343,94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70,222	35,107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859,532	55,78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3,700	71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안' 과 같다.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.

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해당없음.

제 5 조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) 공공요금 및 제세

※ 예산서 자원표기

[국] 국고보조금, [군]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, [기] 국가기금보조금, [시] 시비보조금  
 [특] 특별교부세, [교] 특별조정교부금, [구] 자체재원, [채] 지방채